



행정안전부

행정안전부

보다 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유치원 자녀 보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권장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'유치원 개학 연기' 선언 등에 따라 유치원 자녀들의 보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3. 이에 유치원 자녀를 둔 공무원 학부모가 자녀 양육에 차질이 없도록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, 육아시간, 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복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시·도에서는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시·군·구 및 산하기관에도 동 내용을 반드시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>

제2조(근무시간 등)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·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(이하 "유연근무"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7조의6(특별휴가)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어린이집등"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
2.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「민법」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
끝.

**행정안전부장관
부서장관**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세종특별자치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행정사무관 이정와 지방인사제도 천결2019.3.3.
과장 채수경

협조자

시행 지방인사제도과-1000 (2019. 3. 3.) 접수

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(어진동, 행정안전부 별관) / <http://www.mois.go.kr>

전화번호 044-205-3357 팩스번호 044-204-8953 / jeongwa@korea.kr / 대국민 공개